

〈토론 2〉

학교급식법의 개정 방향

송 기 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간사)

1. 학부모와 시민들의 노력

그동안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노력한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학교 급식의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다.

2004년 12월 현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3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국무조정실, 〈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정책 간담회 자료〉).

2. 학교급식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은 조문 수도 11개에 지나지 않고, 급식 전문인력이 상호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조리하여 맛있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학교급식법은 급식시설 중심으로 규정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학교에서나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도록 보편적인 법적 근거를 학교급식법에서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식재료만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비 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우리 농산물 식료 구입에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가능한 일이다. 학교급식

이 지역 농업의 기초가 되도록 그 지역의 농산물을 제철에 구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식품비 지원 예산을 그 지역 농산물의 구입에 사용하도록 한 전라북도과 경상남도의 조례는 의미가 크다.

둘째, 이제는 위탁급식의 상업성을 방지하는 직영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언제나 직영급식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영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교급식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리 주체인 조리사와 학교 영양사들의 상호 협력체계가 전문인력 육성의 출발이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를 조리하는 조리사와 학교 영양사의 역할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이 나올 수 없다. 이 점은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3. 조리사의 직무 범위와 배치기준

학교급식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호라는 점에서 현행 학교급식법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격을 영양사로 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그 업무와 배치까지 규정하면서,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그리고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까지 영양사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영양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영양사가 조리실 종사자의 조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내용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75조에 의할 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조리 업무는 조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조리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업무이다. 그러함에도 학교급식법은 조리사의 조리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학교급식법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영양사에게 조리지도·감독권을 주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 현장의 조리 주체인 조리사가 영양사와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조리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인 조리업무를 영양사와 협력 속에서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발전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만일 식품위생법에 조리사의 직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급식법에 조리사의 직무범위와 배치기준을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따른다면,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다 위와 같이 영양사의 업무 내용과 배치기준을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그 어디에도 영양사의 업무내용과 배치기준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가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리사의 직무범위와 배치기준을 규정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학교급식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에서 조리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그 배치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름으로 인하여, 학교 급식 재료와 함께, 학교급식의 맛과 위생을 결정하는 조리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무시되고, 비정규직으로 소외되며, 영양사와의 합리적 업무 협력관계가 상실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법에 조리사의 직무범위와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여러 법률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17조가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를, 중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과 직무범위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6조 제1항이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초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 제1항이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아동복지법 제19조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